

# 제 24 차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참관기

## 홍 무 기 / 국립보건원 위생부

제 24 차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의가 한국등 42개국 대표 및 AOAC등 12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네델란드 해이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수산부 홍인식 과장, 농약연구소 송병훈 박사 및 본인이 정부 대표로서 참석하였고 농약공업협회 및 GIFAP(International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Pesticide Manufacturers) 회원사인 한농, 경농 및 동양화학 관계자가 옵저버로서 참석하였다. 다음은 회의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주요 토의내용 및 우리의 식품중 농약잔류 허용기준과 관련한 향후계획을 기술하였다.

### 1. 회의일정

일 시	주 요 의 제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등록</li><li>○ 개회 : Dr.B.Sangster - 화란 보건사회문화성 국장</li><li>○ 의장인사 : Dr.W.H.van Eck - 화란 보건사회문화성</li><li>○ 의제채택 : 본회와 분과토의 그룹의 의제 및 일정 통보</li><li>○ 위원회 관심사항 논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Codex 위원회 제기사항 검토</li><li>- Joint FAO/WHO 식품규격에 관한 관심사항 검토</li><li>- FAO/WHO 활동상황 보고</li></ul></li></ul>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JMPR 보고서 검토</li><li>○ Codex MRLs의 국가별 수용 상황 보고</li><li>○ 잔류 농약 섭취량 보고</li><li>○ Codex MRLs 검토</li><li>○ Codex MRLs 검토 계속</li><li>○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검토</li></ul>
4. 8	

- |         |   |
|---------|---|
| 4.10~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발도상국의 농약문제에 관한 working그룹 보고서 검토</li><li>○ 휴회(보고서 작성)</li></ul> |
| 4.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종보고서 검토</li><li>○ 폐회</li></ul>                                 |

### 2. 참가대표

#### ○ 국가대표 : 42개국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ape Verde, Chile, China People's Rep.of, Cuba, Czechoslovakia, Denmark, Egypt, Finland, France, Gabon, Germany, Greece, Hungary, Indonacia, Iran, Ireland, Israel, Japan, Lresotho, Malaysia, Mexico, Moroc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Rep. of Korea, Spai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 Thai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 of America, Zimbabwe

○ 국제기구 대표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cals)  
Council of Europe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FIVS(International Federation of Wines and Spirits)  
Greenpeace  
IDF(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IOCU(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s)  
ITIC(International Toxicology Information Center)  
OIV(Office International De La Vigne Et Du Vin)  
GIFAP(International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Pesticide Manufacturers)  
FAO  
WHO

## I. 회의목적

식품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각국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그 결과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 향상 및 국가간의 공정한 식품교역에 기여코자 함.

## II. 회의개요

- 기간 : 1992년 4월 6일~4월 13일  
(8일간)
- 장소 : 네델란드의 해이그(Netherland Hague Congresgebouw)

## III. 주요 회의내용

### 1. 위원회의 관심사항

#### 가. Codex위원회 제기사항

- Codex Maximum Residue Limits의 전산화
- 분석법 및 시료채취법 검토
- 용어의 정의
- 식품 중 동물약품의 제한을 위한 권고 사항
- 동물약품 평가에 관한 우선 순위
-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 수용에 관한 점검

#### 나. Joint FAO/WHO 식품규격에 관한 관심사항

- CCRVDF(Codex 동물약품규격위원회) 등의 결정사항 논의

#### 다. FAO/WHO 활동 상황 보고

### 2. 국제기구로 부터 제기된 관심사항

#### 가. FAO 보고서 검토

#### 나. EEC 의견 검토

#### 다. IUPAC 공지사항

- 국제 IUPAC 회의가 1994. 7. 4~7. 9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 라. ITIC 공지사항

### 3. JMPR 보고서 검토

- 특정한 농약에서 GAP 제도의 실행이 중요함.

- EEC대표는 TMDI 및 EMDI 계산에서 체계적인 이론을 제기하길 원함.
- EEC대표는 ADI가 EDI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GAP제도를 실행할 것을 촉구함.
- WHO측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활동이 아주 위축되어 있음.

#### 4. Codex MRLs의 국가별 수용상황 보고

- Codex MRLs의 국가별 수용상황(완전 수용).
   
불가리아, 쿠바,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미국
- 유럽 공통체는 Codex MRLs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중

#### 5. 잔류농약섭취량 보고

- TMDI 및 EMDI의 계산에 의거 잔류 농약섭취량의 전산화중
- 기존 자료는 WHO 출판물에 의해 정 보입수 가능
- 독일 대표는 TMDI의 계산은 지역별 음식섭취량 및 비율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FAO/WHO/UNEP 식품위해물질분석 계획을 통한 농약섭취량 보고서 검토
- 각국 대표들에 의한 농약섭취량 보고서 검토

#### 6. 식품 및 동물사료의 분류

- 식품 및 동물사료의 효율적 분류를 위한 전산화

#### 7. Codex MRLs의 검토

##### 가. 일반사항

- 1991년 JMPR 평가보고서는 1993년 CCPR에서 논의키로 함.
- Codex MRLs 결정과정중 5, 6, 7, 7A, 7B, 7C 및 8단계의 중요성 강조

##### 나. 농약별 검토

- Aldrin 및 Dieldrin
   
1992년 JMPR에서 논의키로 함.
- Azinphos-methyl
   
현재 제3단계 및 3a단계에서 알팔파 등에 관해 검토중임.
- Captan
   
이 농약에 대한 TADI가 1993년에 소멸됨으로 인해 1993년 JMPR에서 논의키로 함.
- Chlordane
   
과일과 채소류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0.02\text{mg/kg}$  으로 결정
- Diazinon
   
1993년 JMPR에서 논의키로 함.
- Dichlorvos
   
과일( $0.1\text{mg/kg}$ ) 및 채소류( $0.5\text{mg/kg}$ )에 대해 결정
- Dicofol
   
1992년 JMPR에서 논의키로 함.
- MRLs평가 및 JMPR 보고서에 의해 검토된 농약
   
Dimethoate, Diphenyl, Diquat, Endosulfan, Endrin, Fentin, Folpet, Heptachloor, Inorganicbromide, Monocrotophos, Omethoate, Paraquat, Parathion, Parathion-methyl, Cyhexatin, Bromopropylate, Carbendazim, Demeton-S-methyl, Demeton-S-methylsulphone, Oxydemeton-methyl, Disulfoton, Propoxur, Vamidothion, Chloropyrifos-methyl, Bioresnethrin, Acephate, Carbofuran, Metgamidophosphorate, Tecnazene, Aldicarb, Per-

- methrin, Amitraz, Etrimfos, Methacrifos, Azocyclotin, Triadimefon, Deltamethrin, Procymidone, Metalaxyl, Prochloraz, Triazophos, Biter-tanol, Carbodulfan, Flucythrinate, Clofentezine, Cyfluthrin, Glyphosate, Vinclozolin, Propiconazole, Anilazine, Flusilazole, Terbufos, Triadi-menol, Cyromazine, Hexaconazole, Profenofos, Bentazone, Buprofezin, Cadusafos, Glufosinate-ammonium, Hexythiazox에 관해 새로운 MRLs 설정 및 독성, 잔류성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결정함.
- 혼합제로 사용된 농약에 관해 MRLs를 검토한 농약  
Cyhexatin/Azocyclotin, Triadime-fon/Triadimenol, Dimethoate/Formothion/Omethoate/Benomyl/Car-bendazim/Thiophanate-methyl, Acephate/Methamidophos, Carbo-furan/Carbosulfan, Methomyl/Thio-dicarb
- MRLs에 관해 재검토가 요구되는 농약 Coumaphos, Methylbromide, Ethe-phon, Propylenethiourea, Pyrazophos

#### 다. 우유 및 물고기종 잔류농약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법

- Codex 동물약품분과위원회에서 지침서 마련함.

#### 라. 수용여부에 관한 AD Hoc 실행위원회의 보고서 검토

- 카나다의 Mr. B. Murray에 의해 보고됨.
- GAP에 의한 Data들이 신빙성이 있음.

#### 8. 분석방법에 관한 실행위원회 보고서 검토

- 네델란드의 Mr. L. Tuinstra에 의해 보고됨.
- “분석법에 관한 권고사항”이라는 책자를 재 발행 할 계획임.
-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함.  
의장 : Mr. L. Tuinstra  
부의장 : Mr. P. Van Zoonen

#### 9. 개발도상국의 농약문제에 관한 보고서 검토

- 이집트의 Ms. Salwa Dogheim에 의해 보고됨.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요청함.
- 제25차 농약잔류분과위원회를 쿠바에 서 개최하는데 공의함.

#### 10.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실행위원회 보고서 검토

- 카나다의 Ms. J. Taylor에 의해 보고됨.
- 1992년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fenpro-pimorph, fenpyroxinate, tolclofos-methyl 및 haloxyfop에 관해서 논의 키로 함.

#### 11. 다음 회기의 개최지 및 일시

- 제25차 농약잔류분과위원회는 1993년 4월 19일~26일까지 쿠바의 하바나에 서 개최키로 함.

#### IV.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현재 56식품에 대해서 38농약이 설정,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대체로 국제기준(Codex MRLs)이나 미국기준(EPA)에 비해 엄격하므로 이로인해 각국으로부터 식품에 대

한 무역장벽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되고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등 국제기구로부터 식품중 잔류농약등 유해물질에 대해서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종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들도 국제기준에 근접하게 설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 국민보건이란 내국적인 측면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기준들을 거의 zero에 가깝게

설정함이 마땅하나 국제적인 추세나 기준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국제기준이 국제적인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인류보건에 전혀 위해가 없다고 제시하는 수준이므로 앞으로 추가 설정될 우리나라의 식품중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근접하되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 및 식이특성에 맞게 조절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새질서 새생활로  
문화국민 긍지찾자